

1. 개정이유

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모범형·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, 일반 중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운영 중으로 모범형·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최고출력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차종으로 모범형·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최고출력을 각각 110킬로와트, 160킬로와트로 완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
일부개정고시안

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나목 중 “190킬로와트”를 “110킬로와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“220킬로와트”를 “160킬로와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상의 승용자동차
